

# 개화기 충청 지역의 교안과 프랑스 선교사

방상근\*

1. 머리말
2. 충청 지역의 교세와 프랑스 선교사
3. 충청 지역의 교안 사건
4. 교안과 선교사의 역할
5. 맺음말

## 국문 초록

교안이란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교(敎)·정(政), 교·민(民) 간의 분쟁(충돌)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외교적 교섭 및 소송 사건을 말한다. 이 글은 선교사들이 재입국한 이후부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 충청도에서 발생한 31건의 교안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31건의 성격은 발생 원인으로 볼 때, 크게 ‘천주교에 대한 반감’과 ‘교회 및 양대인 자세(洋大人 藉勢)’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반감’ 성격의 교안이 12건이며, ‘자세’ 성격의 교안이 19건이었다. ‘반감’은 1895년 이전의 건수(9)가 이후(3)보다 많았고, ‘자세’와 관련된 교안은 1896년 이후의 건수(15)가 이전(4)보다 월등히 많았다. 189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반감’ 건수가 많고, 이후에는 ‘자세’ 건수가 많았는데, 이것은

\* 역사학자.

1895년을 기점으로 천주교회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향촌의 지배 계층과 대립하는 건수가 많았고, 토지(박해 때 몰수된 토지 포함)와 관련된 교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그리고 교폐와 선교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 등은 충청도 교안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교안은 ‘지방관과 선교사’ 단계에서 해결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으로 보고되어 외부와 프랑스 공사관이 관여했는데, 31건 중 외교사안으로 발전한 건수가 22건에 달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뜻대로 처리된 것이 8건이고, 나머지는 비록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교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교안에 대한 선교사들의 태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교세의 증가와 교회의 위신과 관련된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교인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관의 판결을 따랐다. 다만 회장이나 복사가 관련된 사건은 대체로 이들의 행동을 변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제어 : 충청도, 교안, 선교사, 천주교에 대한 반감, 양대인 자세

## 1. 머리말

교안이란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교(敎)·정(政), 교·민(民) 간의 분쟁(충돌)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외교적 교섭 및 소송 사건을 말한다.<sup>1)</sup> 여기서 교(敎)는 선교사와 신자를 의미하며, 정(政)과 민(民)은 지방관, 향반·토호, 일반 민인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양자의 갈등은 갈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의 원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점도 교안 사건의 발생 건수가 많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교안은 개화기 천주교회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새로운 세력과 문화에 대해 기존 체제의 경계심, 이질감, 이해관계의 충돌이 교안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교안은 한말 천주교회사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안에 대한 연구는 이원순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박찬식과 장동하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졌다.<sup>2)</sup>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이 연도별로 정리되었고, 교안의 대립 구도(지방관리·향반 토호·민인), 원인(정치·경제·사회·문화), 전개 양상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안의 전체적인 성격이 파악될 수 있었다.

교안 연구는 교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격을 다룬 것과 함께 제주교안, 해서교안, 강경포 교안, 지도교안 등 개별 교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3)</sup>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 지역과 전북 지역 등 지역 단위의 교안을 다룬

1) 이원순, 「조선 말기 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169쪽; 장동하, 「한말 교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87쪽; 喬飛, 「清代教案研究的回顧與反思」, 『중국사연구』 67, 중국사학회, 2010, 305쪽.

2) 이원순, 앞의 논문; 박찬식, 「근대 천주교회의 성격과 교안의 발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장동하, 앞의 논문.

3)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참조.

연구도 나왔다.<sup>4)</sup> 그러므로 오늘날 교안 연구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중에 지역 단위의 교안 연구는, 개별 교안에 대한 연구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개개의 교안이 전체 교안의 성격을 대표할 수 없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지역별 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별 연구와 지역별 연구, 지역별 연구와 전 지역 연구가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될 때 교안의 성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필자는 지역 연구의 하나로서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 지역의 교안에 대해서는 이원순이 「조선 말기 사회의 교안 연구」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했고, 차기진도 합덕 지역의 교안을 소개한 바 있다.<sup>5)</sup> 그리고 박찬식은 <전체 교안 일람표>를 작성하는 가운데 34개의 교안을 조사했으며,<sup>6)</sup> 김수태는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내포 교회사를 다루면서 내포 지역의 교안 문제를 언급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원순과 박찬식의 연구는 충청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차기진의 연구도 합덕 본당 지역에서 발생한 5건의 교안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김수태의 연구는 9건의 사례를 소개하며 좀

4) 이원희, 「강원지역과 교안」, 『강원지역 천주교사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서종태, 「한말 전라북도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전북 지역 교안을 중심으로」,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사상·종교1), 흐름, 2016.

5) 차기진, 「충청도 교회와 본당 廢置에 대한 연구-내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문화 활동과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523~526쪽.

6) 박찬식, 앞의 논문, 49~53쪽, 67~77쪽. <전체 교안 일람표>에는 1908년 전북 진안에서 발생한 교안까지 141건을 소개하고 있다.

7) 김수태, 「한말 일제강점기 내포지역의 천주교」,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II, 경인문화사, 2006, 183~188쪽.

더 자세하게 교안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역시 교안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로 교안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충청 지역의 교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 지역<sup>8)</sup>에서 발생한 교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교안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 연구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 2. 충청 지역의 교세와 프랑스 선교사

교안은 교회와 지방관, 교회와 사민(士民)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안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교세와 프랑스 선교사의 존재 여부는 교안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병인박해(1866년) 이후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재입국한 것은 1876년이었다. 이 해에 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가 입국하였고, 1877년에는 리텔 주교와 로베르 신부, 두세 신부가 조선에 들어왔다.

그러나 1878년에는 리텔 주교가, 1879년에는 드게트 신부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럼에도 1880년에는 뫼텔 신부와 리우빌 신부가 입국하였고, 1883년에는 추방되었던 드게트 신부와 함께 프와넬 신부, 조스 신부가 새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1885년에는 일본 나가사키에 있던 코스트 신부가 조선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같은 해에 마라발, 쿠데르, 보두네 신부도 입국하였다. 그 결과 1886년 조불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조선에는 블랑 주교, 로베르, 두세, 뫼텔, 리우빌, 드게트, 프와넬, 마라발, 쿠

8) 본고의 연구 대상인 충청 지역은 1905년 이전 충청도에 설정된 본당들의 관할 구역이다.

데르, 보두네, 코스트 신부 등 11명<sup>9)</sup>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까지 64명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16명이 사망하면서 1905년 현재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는 48명이었다.<sup>10)</sup>

프랑스 선교사 중 개항 이후 충청도 지역을 사목한 사람은 두세 신부와 로베르 신부였다. 「교세통계표」<sup>11)</sup>에 의하면, 1883~1884년에 충남 지역을 순방한 두세 신부와 충북 지역을 순방한 로베르 신부의 사목 보고서가 남아 있다. 두세 신부는 1890년 충남 지역에 본당이 설정될 때까지 이 지역의 사목을 담당했고, 충북 지역은 1896년 장호원 본당이 설립될 때까지 로베르 신부·드게트 신부·마르탱 신부가 활동하였다. 그리고 보두네 신부와 르메르 신부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의 사목을 도와주었다.

그런 가운데 1890년 8월에 퀴를리에 신부와 파스키에 신부가 내포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퀴를리에 신부는 양촌(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합덕 본당의 전신)에, 파스키에 신부는 간양골(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공세리 본당의 전신)에 거쳐하면서, 내포 지역에 2개의 본당이 설립되었다. 이어 1897년에는 공주 본당의 설립을 위해 기낭 신부가 파견되었고, 1901년에는 부여 금사리 본당이 공주 본당에서 분할되어 공베르 신부에게 맡겨졌다.<sup>12)</sup>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1896년에 부이용 신부가 장호원(현 감곡) 본당

9) 원래 12명이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나, 조스 신부(1883년 입국)가 1886년 1월에 사망하면서 조볼조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11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체류하고 있었다.

10) 1876년부터 1910년까지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 시기에 대해서는, 김정환 신부가 작성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명단」(내포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11) 『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1883~1989 교세통계표』, 천주교 대전교구, 1990.

12) 1905년 이전 충남지역의 본당 설립에 대해서는, 차기진, 앞의 논문, 518~523쪽 ; 김정환, 「조선 후기의 천주교 수용」,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당진시·내포교회사연구소, 2012, 25~30쪽 참조.

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충청도 지역에는 1905년 당시 합덕 본당·공세리 본당·공주 본당·금사리 본당·장호원 본당 등 5개의 본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신자 수도 1891년 4,000명, 1895년 4,967명, 1900년 7,549명<sup>13)</sup>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충청 지역의 본당은 대부분 프랑스 선교사들이 담당하였다. 합덕 본당은 퀴를리에 신부가 1904년까지 사목하다가, 1906년부터 크렘프(1906~1921 재임) 신부로 교체되었고,<sup>14)</sup> 공세리 본당은 1895년에 드비즈 신부가 부임했다가, 1896년에 기낭 신부, 1897년에는 다시 드비즈 신부가 맡아 1930년까지 사목하였다. 공주 본당은 기낭 신부에 이어 1899년부터 파스키에 신부가 담당했고, 1904년에는 퀴를리에 신부가 부임하여 1909년까지 사목하였다. 그리고 금사리 본당은 공베르 신부가 1923년까지 활동했으며,<sup>15)</sup> 장호원 본당은 초대 주임인 부이용 신부가 1947년 사망할 때까지 사목하였다.<sup>16)</sup>

요컨대 개항 이후부터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 충청도에서 사목한 프랑스 선교사는 두세, 로베르, 드게트, 마르탱, 퀴를리에, 파스키에, 드비즈, 기낭, 줄리앙 공베르, 부이용 신부 등 10명이었다.<sup>17)</sup>

13) 『서울교구연보』(I), 명동천주교회, 1984, 110·173·176·275쪽.

14) 그사이 합덕 본당은 한국인 홍병철 신부가 담당하였다(김수태, 「구합덕 성당 성직자의 서한 분석」, 『교회사연구』 2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56쪽).

15) 공베르 신부는 1915년까지 사목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다시 금사리 본당으로 복귀하였다.

16) 부이용 신부는 1943년에 일제에 의해 신학교에 연금되었다가 1945년에 풀려났다. 그사이 본당은 장금구 신부와 유영근 신부가 차례로 담당하였다.

17) 1905년 당시 충청도 지역 중 은진, 진잠 지역은 전라도의 나바위 본당, 진천·목천·천안 일부는 경기도의 안성 본당 관할 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은 본고에서 제외하였고(예 : 강경포 교안), 평택은 당시 충청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 3. 충청 지역의 교안 사건

선교사들이 사목하는 가운데 교·정, 교·민 간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찬식은 천주교회의 자료와 정부 측 자료를 토대로 140건(1887~1906)의 <전체 교안 일람표>를 작성했는데,<sup>18)</sup> 이 일람표와 다른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충청도 교안만을 재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sup>19)</sup>

<표> 충청도 지역 교안 일람표<sup>20)</sup>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	1891	예산	교민 (소작인)	지주, 군수	(예산 솥골) 양반을 자칭하는 산 주인 심가가 병작인인 교우 이가를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아내고자 함 → 이가가 반발하자, 그를 모함하여 관에 고발함 → 군수가 이가를 가두고, 포졸들에게 교인들을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지시 → 파스키에 신부가 군수에게 위협적인 어조의 편지를 써서 해결. <sup>21)</sup>	M(위텔 문서)- 1891 연말보고

18) 박찬식, 앞의 논문, 67~77쪽. 이에 대해 장동하는 외국의 자료까지 검토하여 305건의 교안 사례를 추출하였다(장동하, 앞의 논문, 389쪽).

19) 이원희는 박찬식의 교안 일람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롭게 14건을 추가하여 강원도 교안 30건을 제시했고(이원희, 앞의 논문, 75~77쪽), 서종태도 박찬식의 통계를 참조하면서 34건을 추가한 51건의 전북 교안을 소개했다(서종태, 앞의 논문, 263~269쪽). 충청도 교안과 관련해서 필자는 『충청도관초』(규장각 소장) 등을 통해 5건(<표>의 11, 15, 18, 27, 31)을 추가했다.

20) 박찬식이 제시한 <일람표>에는 충청도와 관련된 교안으로 34건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34건 중에는 중복되는 사건이 있고, 또 지역은 충청도이지만 전라도 본당에 속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는 이러한 교안 사건들을 제외하고, 필자가 『충청도관초』 등에서 새로 찾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21)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천주교 대전교구, 1994, 30~34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2	1891	남포	신부	우성중, 박의경	5월 22일 프랑스 공사관에서 외국인을 침학한 자로 남포에 사는 박의경과 우성중의 처벌을 요청 → 5월 24일 자로 의정부에서 남포현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우성중과 박의경을 체포하여 엄정하도록 함 → 6월 21일 자로 충청감영에서 관칙(關勅)대로 하였음을 의정부에 보고함.	M-1891-47, 50 「법안」 365, 366 「忠淸道關草」 2책, 31b~32a.
3		아산	교민 (소작인)	지주	파스키에 신부가 피정을 위해 상경할 때 아산 돌실 마을을 지남 → 신부가 지나간 다음, 주민들이 그 양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교우들에게 옥설과 핍박을 가하며 병작권을 주지 않음 → 신부가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토록 함 → 군수가 지주를 때로 다스림. <sup>22)</sup>	M-1891 연말보고
4	1892	부여	교민 백만수	면임 (풍헌) 포교	면임(풍헌) 김청일이 포교 3인을 데려와 본관의 명령이라며 백가를 체포한 후 무수히 구타하고 혹형을 가함 → 엽전 27냥을 준 뒤에 풀려남 → 근처 부랑배들이 백가의 집에 돌입하여 양식과 재산을 가져감.	M-1893-43~47
5	1893	천안	박 요한, 신부	감사, 군수	충청감사가 익명자의 고발을 받고 천안 군수에게 박 요한을 체포하라고 함 → 박 요한은 황소 12마리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고소되어 천안에 갇힘 → 파스키에 신부가 천안 군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어 군수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함. <sup>23)</sup>	M-1893-199

22)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31~32쪽.

23)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61~67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6	1894	신창	박 마지아	오 의원 (양반)	오 의원이 외교인인 장가의 아내를 범하고 차지함 → 박 마지아와 장가가 프랑스 공사와 주교가 보낸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오 의원을 찾아가 사정없이 때린 후 아내를 찾아오고, 이어 돈도 요구함 → 신창 선비들이 집결, 군수에게 교인을 죽이고 성당을 파괴할 것을 청함 → 파스키에 신부가 박 마지아 등을 잡아다 군수에게 보내 법대로 처리하라고 함. <sup>24)</sup>	M-1894-9
7		신창	예비 신 자 김가, 이 도마, 손 안당	이무정, 민화순 (양반)	김가가 외교인일 때 양반인 이무정과 민화순이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돈을 요구 → 이에 복수하기 위해 입교 → 이 도마, 손 안당도 예비 신자 정가와 함께 자신들을 이와 민에게 밀고한 강가에게 돈을 뺏으려 함 → 이들은 신부가 자신들을 보냈고, 신부도 올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짐 → 신부가 이들을 잡아다 자백을 받은 후 손가와 이가를 군수에게 보냄. <sup>25)</sup>	M-1894-9
8		덕산	퀴를리 에 신부	동학 농민군	양촌 사제관 파괴에 따른 보상과 가해자 엄징 지시 → 복구됨. <sup>26)</sup>	「法案」 603, 604
9		간양동	파스키 에 신부	동학 농민군	간양동 사제관 파괴에 따른 보상과 가해자 엄징 지시 → 750냥 받음. <sup>27)</sup>	「법안」 603, 604
10		노성	교민	동학 농민군	노성 상도면 행정(杏亭)의 선교사 거처와 교민 가호 70여 호를 소각한 동학도 엄징 요망.	「법안」 605

24)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3~74·79~80쪽.

25)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74~75쪽.

26)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109쪽.

27)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320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1	1895	정산	배학주 퀴를리에 신부	왕진리 존동 (尊洞), 정산 현감	교인 배학주가 동학도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찾으려고 왕진리에 감 → 마을의 존동과 상의하여 100냥을 받기로 함 → 그러나 정산현에서 존동을 잡아갔고, 100냥을 배학주에게 주지 않음 → 배학주가 퀴를리에 신부 명의의 편지를 정산현으로 보냄 → 편지에서 퀴를리에 신부는 100냥을 배학주에게 돌려주도록 강하게 말함 → 정산 현감은 이를 부당히 여겨 의정부에 보고함.	「충청도관초」 1895. 윤4. 29.
12		한산	김선재, 서가량, 퀴를리에 신부	촌민 오응노, 군수	동학에 가담한 김선재, 서가량이 1895년 여름에 천주교에 입교 → 선교사의 위세를 믿고 원한이 있는 오응노를 구타하고, 재산을 빼앗음 → 오응노의 처가 고소, 한산 군수가 체포 → 퀴를리에 신부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군수에게 보냄 → 서가량 종신형, 김선재 3년형 판결. <sup>28)</sup>	「법안」 648 M-1896- 187, 1896- 101, 1897- 22  「사법품보」 (갑)6책, 1896.3.28
13		청양	강용선	이한전 (양반), 관리	이한전이 강용선에게 전답을 팔았다가 환퇴 요구 → 강용선이 거절하자, 관청에서 체포 → 퀴를리에 신부와 인근 동민들이 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함 → 이후 강씨의 자부(子婦)와 조카도 가둠 → 프랑스 공사가 외부에 조회하여 처리 요청.	「법안」 653

28)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순, 앞의 논문, 204쪽 ; 이영호,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동학여당(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2018, 314~318쪽 및 아래의 각주 52) 참조.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4	1896	회덕	김말봉	상득 (송 도사의 노)	동학도였던 김말봉이 채무를 갚지 않고, 성교를 청하며 그 자식과 무리를 이끌고 와 송 도사의 가족을 폭행하고 돈을 강요함.	M-1896-221
15		평택	기낭 신부	최학술	평택에 사는 최 씨 사망 → 양자인 최학술이 첩 박 씨(교우)가 받은 재산과 아이 3명을 빼앗아가려 함 → 평택관에서 재산과 아이들을 박 씨에게 가도록 판결 → 최학술은 이 결정이 기낭 신부의 권력에서 나왔다고 여기고 보복하고자 함 → 방의운·최양칠·송종환·박가·장원달 등과 평택군에 이르러, 프랑스 공사의 명령을 받고 기낭 신부를 체포하러 왔다 함 → 기낭 신부가 방의운·최양칠·송종환을 잡아 평택군에 인도, 나머지 3명은 도망 → 프랑스 공사를 통해 이들의 체포와 처벌 요청 → 그러나 평택 군수는 기낭 신부가 소송에 관여하여 관리를 핍책(逼責)하고 인민에게 시형(施刑)하거나 잡아 가둔 사건이며, 애초 신부를 체포하려 한 일도 없었다고 보고함 → 결국 최학술 등 평택군에 갇혀 있던 4명 석방.	M-1897-18, 220, 221, 28 「법안」 748 「內部來去文」 9책 (1896.12.24) 5책(1897.1.26) 「忠清南北道來去案」 1책, 1897.3.7.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6	1897	아산	교민 홍선명 의 친척 홍성삼	이헌구, 관리	외교인 홍성삼의 산에 수원군 현암면에 사는 이헌구가 묘를 씌 → 홍성삼이 묘를 파내고 도망함 → 수원 관아에서 홍성삼을 찾지 못하자 결매(아산시 인주면)에 사는 친척 홍선명을 잡아가려 함 → 홍선명이 교인임을 내세워 수원에서 온 순검과 관차(官差)들을 공세리 성당으로 데려감 → 퀴를리에 신부와 기남 신부가 홍선명이 홍성삼의 친척이라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체포할 이유가 없다 하자 돌아감 → 이후 수원 관아에서 2명이 다시 성당에 왔지만 드비즈 신부의 입장도 같아 그냥 돌아감. <sup>29)</sup>	「법안」 792, 794  M-1897-10(2)

29)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327~329쪽. 그러나 수원 군수가 외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황선명과 황성삼이 함께 무덤을 파고, 황선명을 체포하였으나 교인 수십 명이 순차(巡差)를 잡아 성당으로 가서는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며 내쫓았다.”고 한다. 이후 다시 순차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상황이 전개되자, 수원 군수는 수원군에서 황선명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외부가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照會)할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냈던 것이다. 실제 ‘외부 → 프랑스 공사관 → 뮌헨 주교’로 사안이 전달되면서, 뮌헨 주교는 공세리 본당의 드비즈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드비즈 신부는 1897년 9월 6일자로 답신을 보내 사안에 대해 해명하였다(『京畿道來去案』 1책, 규장각 소장, 107a~108b).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7	1897	예산	교민 유유복 등	지방관	4월 초 예산 솟골에 사는 아이 유계갑이 화적(火賊)이 들었을 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쌀을 줌 → 도둑을 잡으러 온 온양의 장교들이 아버지 유유복을 화적으로 간주하고 온양으로 끌고 감 → 기낭 신부의 조언대로 교우들이 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려 감 → 관장의 부재로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19명의 교우가 체포되어 홍주 옥에 갇힘 → 15명은 석방되고 나머지 4명과 유유복을 위해 증계하려 했던 외교인 1명 등 5명은 공주로 이송 → 4월 20일 유유복을 제외한 4명은 태 20대씩 맞고 석방 → 아들 유계갑이 아버지의 억울함 상소 → 법부에서 조사하여 애매하면 석방하라고 충청감사에게 훈령 → 5월 초 석방. <sup>30)</sup>	M-1897-107, 108, 109, 연말보고, 112, 113  『사법품보』(갑) 21책, 1897.4.25/5.10.
18		공주	기낭 신부	공주 군수, 충청 남도 관 찰사	공주군의 책장(冊匠) 정완돌이 책장청사(冊匠廳舍)를 사가(私家)로 모칭(冒稱)하고 기낭 신부에게 팜 → 기낭 신부는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재료로 성당 건축에 활용코자 함 → 군수가 정완돌을 체포한 후 기낭 신부에게 대금을 돌려주고 청사의 반환 요청 → 신부 거절 → 공주군에서 충남 관찰사, 관찰사가 외부, 법부, 탁지부에 보고 → 교회 측에서는 주교를 통해 프랑스 공사에게 알림 → 외부가 공주 군수에게, 탁지부에서는 관찰사에게 훈령 → 철거 작업 이루어짐. <sup>31)</sup>	「忠清南北道來去案」1책, 1897. 7. 10.  M-1897-76, 85, 87, 90, 99

30)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15~421쪽.

31)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28~431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9	1897	보은 (충북)	교민	김치문 (동학도)	회인 현감의 산직이 김치문은 동학 괴수였음 → 천주교는 못 할 것이고, 동학을 믿어야 된다고 함 → 김가를 불러 책망 → 회인현에서 관인을 보내 신자 체포.	M-1897-149
20		충주 (충북)	교민 김덕제 등	정유섭	충주에 사는 정유섭이 300냥을 주고 고용녀(雇傭女) 태산을 매득 → 4월 8일에 태산의 모친 옥섭이 이웃에 사는 교우 김덕제와 임영호와 함께 와서, 장호원 본당 선교사의 분부라 하며 태산을 빼앗아감 → 정유섭이 외부에 고소 → 외부에서 충주군에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태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함.	「외부소장」 광무1, 5.
21	1900	보령	남춘화	보령 군수	교인 남춘화 등이 김 진사에게 송목(松木)과 점기(店基) 매득 → 보령 군수가 관에 고하지 않고 설점(設店)한 죄로 매를 치고 가둠 → 고을 밖으로 내쫓으려 함 → 파스키에 신부가 주교에게 알림 → 외부에서 관찰사에게 훈령 → 관찰사가 보령 군수에게 시비(是非) 파악 지시 → 성공적인 결말, 군수가 신부에게 해명하는 편지 보냄. <sup>32)</sup>	M-1900-77, 98, 202

32)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64~465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22	1900	대흥	교민 유관보	대흥 군수	유관보가 유 선달에게 속아서 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50냥 지불 → 유 선달의 6촌이 자신의 눈이라며 문서를 돌려 달라고 함 → 50냥을 대신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가 소송 제기 → 군수가 교우 체포. 천주교의 세력을 믿고 훔친 땅을 헐값에 샀다고 몰고 감 → 피나도록 불기를 맞고 10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석방됨 → 유관보가 진정서 제출 →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 → 신부가 주교에게 알림. <sup>33)</sup>	M-1900-137(a), 174
23		홍주 · 덕산	박정교	강진환 등 11인	강진환 등 11인의 답토(畓土) 중에 1866년 당시 신자의 것이 적몰된 것이 있으나, 이미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뀐 상황 → 그런데 교인 박정교가 인천덕의 답토라며 11명을 가두고, 혹 돈을 토색함 → 부군(府郡)에 원통함을 호소하여 박정교와 인천덕이 덕산군에 갇힘 → 인천덕이 자기 땅이 아니고, 박정교의 꼬임에 빠진 것이라 자백하면서 해결됨.	「외부소장」 광무4, 11.

33)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68~472쪽.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24	1900	제천 (충북)	부이용 신부	안철순 등	1866년에 몰수된 교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찾음. 그러나 현 소유자들이 인정하지 않음 → 부이용 신부가 추수 차 교인들과 함께 현지 방문, 동네 사람들과 충돌 → 신부의 손을 묶고 발로 차고 욕을 함 → 토지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뜻의 수표(手標)를 써 주고 풀려남 → 이후 프랑스 공사를 통해 선교사와 교인들을 구타한 군민들의 처벌 요구 → 정재익 등 5명이 체포되어 서울 평리원으로 압송되었고, 뒤이어 안철순과 최윤문도 평리원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게 됨.	「법안」 1312, 1322, 1323·… 「황성신문」 광무4, 10. 22 ; 11. 5 「內府來文」 광무 4, 9. 11. <sup>34)</sup>
25	1902	장호원 (충북)	교민 정연오, 부이용 신부	군수 (봉세관)	교인 정연오가 푸줏간을 사설(私設)함 → 과세함이 과다하자 교민들이 세금을 받으러 온 관예(官隸)를 구타하고 쫓아 보냄 → 이튿날 부이용 신부가 관청에 가서 관장을 꾸짖었고, 박 복사도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 행동함 → 정연호를 잡아 가둠 → 프랑스 공사를 통해 내장원에 정연호의 석방을 요청함 → 세금을 내고 푸줏간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됨.	M-1902-6 「忠清南北道來去案」 광무6, 1. 30. 「訓令存案」 광무6, 3. 9.

34) 『내부내문』15책, 규장각 소장, 44a. 이외 『內府來去文』 13책, 규장각 소장, 63a·69a ; 『平理院來去文』 1책, 규장각 소장, 45a ; 『忠清南北道來去文』 1책, 규장각 소장, 228a 참조.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26	1903	임천	윤순경 (회장), 이두성, 공베르 신부	백효기, 군수	윤경무가 교회 돈 600냥을 빌림 → 이 돈을 그의 처남인 백효기에게 받고자 했으나 거부 → 회장 윤순경이 순동운과 이두성을 보내 백효기를 잡아가려 함 → 임천 군수가 이두성과 윤순경을 체포하여 압송할 때, 부여에서 교인들이 나타나 두 명을 탈취해 감 → 홍산군에서 이들을 잡으려 갔을 때 이두성은 도망하고 윤순경만 체포함 → 그러나 공베르 신부가 교인 10여 명을 이끌고 관청으로 와 윤순경을 데려감 → 공베르 신부가 감사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이 남. <sup>35)</sup>	「법안」 1703, 1706  M-1903-40  「照覆起案」 <sup>36)</sup> 광무7, 2. 10.
27		아산	박치관	박수봉	여각(旅閣)을 운영하는 박수봉이 고객의 무미(寶米)를 박치관에게 맡겨 인천까지 운송케 했는데 중간에 빼돌림 → 박치관은 공세리 본당 선교사에게 수교(受敎)하고 재산을 처분해 숨긴 후 공세리 성당에 은신했고, 박수봉이 무고(誣告)하고 있다고 고집함 → 아산 군수가 선교사에게 공찰(公札)을 보내 박치관의 조사를 요청했으나, 선교사가 듣지 않음.	「충청남북도 내거안」 광무7, 1. 16.  「외부소장」 광무7, 2.

35)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90쪽; 『뫼텔 주교 일기』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241쪽.

36) 『照覆起案』 2책, 규장각 소장, 8a~10b.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28		아산	강두영 등	박성진 (유학), 김명철 (병민) 등	공세리 본당의 복사 강두영이 교세를 믿고 불법을 자행한다며 박성진 등이 외부에 고소 → 충청 감사가 외부의 지시를 받고 면천 군수에게 조사시킴 → 강두영, 김공익, 송문숙 등이 자복 →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재판이 불공정하고 유민(儒民)들이 모해한다며 도망하여 성당에 숨음 → 사람을 파견했으나, 선교사가 거부하고 보내지 않음. 한국 정부가 교도를 침해하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함 → 서울 한성부 재판소에서 2심이 진행되다가, 충청남도 재판소로 이관됨.	「외부소장」 광무7. 5. 1. 「충청남북도 내거안」 광무7. 6. 12 ; 6. 27. 「훈지기안」 광무7. 8. 5. <sup>37)</sup> 「법안」 1737, 1739, 1824
29	1903	천안	정영원, 정이서, 드비즈 신부	현영달, 천안 군수	온양 사는 정민호, 정성교, 정영원, 정이서 등이 정씨 산에 쓴 현영달의 부친 묘를 강제로 파헤침 → 현가의 족인이 천안 군수에게 고소 → 정민호, 정성교 체포 → 정영원, 정이서는 성당으로 피신 → 교인들이 현영달의 사종(四從)인 현영호를 성당으로 잡아감 → 천안 군수의 공환(公函)에도 따르지 않으며, 정가를 놓아 주지 않으면, 현가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함.	「법부내거문」 광무7. 3. 17. 「법안」 1702, 1705
30		제천 (충북)	교민	전 군수 한국동	한국동이 외부에 소장(訴狀) 제출 → 교인들이 자신의 땅 중에 (박해 때 몰수된) 교인의 전토가 있다며, 추수한 곡식을 역지로 빼앗아 감. 장호원 본당의 선교사가 이 사안에 간여하고 있음.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하여 교인들의 폐단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소장 내용.	「외부소장」 광무7. 5. 30. 「법안」 1731, 1735, 1736, 1738

37) 『訓指起案』 10책, 규장각 소장, 41a~42b.

구분	연도	발생 지역	대립 구도		사건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31	1904	아산	박평식, 유명운, 김영선	봉세관, 관찰사	수원군 가사면 삼도둔(三島屯)의 마름인 박평식이 서교 세력을 빌려 3년 치 도조(賭租)를 건몰(乾沒)함 → 김교습을 새로운 마름으로 정함 → 공세지에 사는 교인 유명운과 김영선이 마름을 자칭하고 김교습을 쫓아낸 후 조도(早稻)를 임의로 수확함 → 충청남도 관찰사가 내장원에 공문, 주교에게 조회 요청 → 내장원에서 유명운과 김영선의 체포 지시 및 주교에게 조회.	「訓令照會存案」 55책, 광무8, 9. 23 ; 9. 25

〈표〉에서 제시한 교안의 성격은 발생 원인으로 볼 때, 크게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하 ‘반감’으로 표기)과 ‘교회 및 양대인 자세(洋大人 藉勢)’(이하 ‘자세’로 표기)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반감’ 성격의 교안은 12건이며, ‘자세’ 성격의 교안은 19건이었다.

‘반감’의 경우는 다시 ‘천주교 자체에 대한 반감’(8건<sup>38)</sup>과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된 반감’(4건<sup>39)</sup>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경제 문제와 결부된 반감’은 천주교에 대한 반감으로, 신자들로부터 병자권을 빼앗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 자체에 대한 반감’ 8건 중에는 동학군에게 피해를 입은 3건<sup>40)</sup>도 포함되어 있다. ‘반감’은 시기적으로 1891년부터 190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1895년 이전의 건수(9)가 이후(3)보다 많았다.

‘자세’와 관련된 교안도 토지·세금·빚 등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된

38) 〈표〉의 2, 4, 5, 8, 9, 10, 19, 21.

39) 〈표〉의 1, 3, 13, 22.

40) 〈표〉의 8, 9, 10. 동학군에게 피해 본 것이 교안 사건인지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민 간의 갈등으로 보고 목록에 포함시켰다.

것,<sup>41)</sup> 산송 문제,<sup>42)</sup> 신변 보호와 복수,<sup>43)</sup> 교폐<sup>44)</sup>와 관련된 것 등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발생 시기는 1894년부터 1904년까지 나타나며, '반감'과는 달리 1896년 이후의 건수(15)가 이전(4)보다 월등히 많았다.

189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반감' 건수가 많고, 이후에는 '자세' 건수가 많은 것은, 1895년을 기점으로 천주교회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즉 1895년 1월 22일에 병인박해 때 순교한 남종삼과 홍봉주가 신원되었고, 8월 28일에는 뫼텔 주교가 고종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 미치는 주교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 결과 천주교회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1895년 이전에는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던 교회가 1895년 이후에 입장이 강화되면서, 교안의 양상도 '반감'보다 '자세'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sup>45)</sup>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체로 전체 교안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1896년 이후에 발생한 건수(18)가 이전(13)<sup>46)</sup>보다 많다는 것,<sup>47)</sup> 교회와 대립 구도에 있는 상대가 양반·지주·지방관·민인이라는 것,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대립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sup>48)</sup>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충청도에서 발생한 교안만의 특징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박찬식이 정리한 <교안의 대립 구도, 원인, 전개 양상을 나타낸

41) <표>의 11, 14, 15, 23, 24, 25, 26, 27, 30, 31.

42) <표>의 16, 29.

43) <표>의 6, 7, 12.

44) <표>의 20, 28.

45) 방상근, 「개화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착과 한국 인식」, 『東洋學』 6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186~187쪽.

46) 31건의 발생 시점은, 1891년(3), 1892년(1), 1893년(1), 1894년(5), 1895년(3), 1896년(2), 1897년(5), 1900년(4), 1902년(1), 1903년(5), 1904년(1)이다.

47) 박찬식, 앞의 논문, 56쪽; 서종태, 앞의 논문, 241쪽.

48) 장동하가 분석한 305건의 교안 중,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교안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장동하, 앞의 논문, 391쪽).

표><sup>49)</sup>가 주목된다. 박찬식에 따르면, 교안의 '대립 구도'에서 교회 측과 지방관의 대립 사안은 40건, 향반·토호층과의 대립은 27건이 나타난다. 그런데 지방관과 대립한 40건 중에 충청도에 해당하는 것은 10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12건(30%)인 전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향반·토호층과 대립한 27건 중에 충청도에 해당하는 건수는 12건(44.5%)으로, 두 번째인 전라도(5건, 18.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방관과 향반·토호는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집단과의 대립 건수를 합산하면, 충청도가 22건(32.8%)으로 17건(25.4%)인 전라도 보다 많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도 교회가 향촌의 지배 계층과 가장 많이 대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천주교에 대한 향촌 지배층의 반감이 그만큼 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sup>50)</sup>

실제 천주교에 대한 지방관들의 반감은 강했다. 청양 현감은 쿠틀리에 신부가 동민(洞民)들과 함께 강용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동민들에게 “조선의 일로 외국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강용선의 며느리와 조카까지 체포하여 가두었다(⑬-1895).

보령 군수는 남춘화 등 교인에게 송목(松木)을 판 김 진사를 책망한 후

49) 박찬식, 앞의 논문, 61~64쪽의 <표 7>.

50) 개화기 전라도와 충청도의 교세 통계표를 보면, 대체로 전라도의 신자 수가 충청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온다. 1891~1892년(전라도 : 본당 3개, 신자 수 4,659명/ 충청도 : 본당 2개, 신자 수 3,538명), 1898~1899년(전라도 : 본당 5개, 신자 수 8,418명/ 충청도 : 본당 4개, 신자 수 6,431명), 1900~1901년(전라도 : 본당 7개, 신자 수 9,859명/ 충청도 : 본당 4개, 신자 수 7,062명), 1903~1904년(전라도 : 본당 8개, 신자 수 12,656명/ 충청도 : 본당 5개, 신자 수 7,174명). 신자 수가 적었음에도, 지방관·향반·토호층과의 대립 건수가 전라도보다 충청도가 많은 것은 이들과의 갈등이 충청도에서 심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전북 지역의 경우 51건의 교안 중 지방 관리층과의 대립 사안이 19건, 향반·토호층과의 대립 사안이 7건인데(서종태, 앞의 논문, 254쪽), 지방관과의 대립 건수가 많은 것은 박찬식의 전라도 전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전라도는 향반·토호층보다 지방관과의 대립이 심했고, 충청도는 지방관보다 향반·토호층과의 대립이 좀 더 심했다고 하겠다.

신자들을 체포했고, “가까이할 수 없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는 불법한 인물이 많아, 늘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고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였다(㉒-1900).

대흥 군수는 유관보가 자신의 일을 파스키에 신부에게 상의한 것을 꾸짖고, “네가 계속 서양인 집에 가고 싶거든 삭발을 하고 서양으로 가라.”는 말까지 하였다(㉒-1900).

지방관들은 선교사가 그들의 행동과 이익을 제약한다고 보았고, 천주교 신자는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지방관들은 천주교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함은 물론 천주교를 탄압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sup>51)</sup> 그리고 이러한 반감이 표출되는 가운데, 양자의 대립 구도가 자주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자들에 대한 지방관의 반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선교사가 관여했음에도 교회 측의 의도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㉒번 사건에서 퀴를리에 신부는 군수에게 김선재와 서가량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sup>52)</sup> 앞서 언급했듯이, 퀴를리에 신부가 강용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청양 현감은 오히려 그의 가족까지 체포하여 선교사의 간섭에 반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㉒번 사건에서 대흥 군수는 파스키에 신부를 만나 유관보의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내부대신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황성신문』에까지 기사가 실리게 하여 선교사의 간섭에 반발하고 있었다.

51) 방상근, 앞의 논문, 185쪽.

52) 1896년 3월 서가량은 중신형, 김선재는 3년형에 처해졌다. 이후에도 퀴를리에 신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뮌헨 주교에게 도움을 청했고, 주교는 관련 서류를 플랑시 공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은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서가량은 1897년 1월 이전에 병 때문인지 석방되었다가 대세를 받고 사망했고, 김선재는 1897년 10월에 6개월의 감형을 받았다(『司法稟報(甲)』 6책, 규장각 소장, 97a~97b;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117~118쪽; 『뮌헨 주교 일기』 II[1896년 8월 21일; 8월 31일; 1897년 1월 24일],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98~99, 142~143쪽; 『관보』 776호, 1897년 10월 25일 자).

다음으로 충청도 교안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토지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박찬식의 연구에 의하면 ‘교안의 원인’ 중 토지와 관련된 사안은 29건인데, 그중 가장 많은 9건이 충청도에서 발생하였다. 아마 충청도 신자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편 9건 가운데 3건(㉓, ㉔, ㉕)은 1866년 병인박해 때 몰수된 교민의 토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중 ㉓(1900)은 교인 박정교가 박해 때 적몰된 교인의 토지를 빌미로 현재의 소유주에게 돈을 토색한 사건이고, ㉔(1900)은 교회에서 토지 소유권을 환수했지만, 현 소유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㉕(1903)은 적몰된 땅의 소유권을 두고 교인과 현 소유자가 갈등을 빚어 현 소유주가 고소한 사건이었다. 비록 3건에 불과하지만, 박해 때 몰수된 토지가 교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1895년 이후 강화된 교회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박찬식이 제시한 <교안의 대립 구도와 원인·전개 양상표>에는 18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충청도의 경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청도에서 교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과 <표>에서 제시한 31건 중 ‘자세’에 의한 교안 비율이 높았듯이, 충청도의 교폐(敎弊)가 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시기 충청도의 교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03년에 아산 지역의 유학 박성진과 평민 김명철 등 38명이 연명으로 외부에 제출한 청원서이다. 이 청원서는 공세리 본당의 목사 강두영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㉘), 강두영과 교민들의 작폐 1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sup>53)</sup>

53) 『외부소장』, 광무 7년 5월 1일. 이원순, 앞의 논문 각주 81), 201쪽.

1. 여러 읍의 수령들이 죄인을 잡아 가두면, 무리를 지어 억지로 빼앗고, 공당(公堂)에 돌입하여 관장을 욕되게 한 일.
2. 연전에 동학의 우두머리들을 소탕할 때 체포되지 않은 자들이 모두 입교하여, 이전의 버릇대로 행하며 무법을 자행하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일.
3. 남에게 빚진 자가 교를 믿고 갚지 않으며, 억지로 곡식을 탕감하도록 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준 자는 억지로 이자에 이자를 더하여 그 가산이 모두 탕진된 후에야 그만둔 일.
4. 남의 무덤을 조금의 신중함도 없이 작당하여 강제로 파내거나, 그 무덤 가까이 강제로 장사한 일.
5. 토지를 빌려 병작함은 가난한 집의 목숨과 같은 것인데, 땅 주인을 통하지 않고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은 일.
6. 남의 위토(位土)와 묘막(墓幕)은 본래의 주인이 있는데, 멋대로 빼앗아 교민에게 준 일.
7. 교민과 평민이 송사의 단서가 있으면, 시비곡직은 관에서 판결을 하는데, 송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여한 일.
8. 교민과 평민이 상관된 일이 있으면, 존비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 잡아가서 관아처럼 강제로 재판하는 일.
9. 머슴이나 종들이 입교 중이라 칭하고, 백주에 상전을 능욕한 일.
10. 본군의 둔포 여각과 상고(商賈)가 쌀을 무역하는데, 박치관 등을 시켜 배로 운반한다고 하여 빼앗아 먹고 갚지 않은 일.
11. 궁답(宮答)과 사답(私答)의 마름을 주인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강탈한 일.
12. 교인이 과부를 억지로 빼앗은 일.
13. 세거(世居)한 사부(士夫)를 도리를 훼손했다 하고 고을 밖으로 축출한 일.
14. 수원 가사면 건곤리 이명화를 잡아다가 중형을 가하여 죽게 한 일.
15. 교민 한성문과 방한길 등이 남의 집 마름으로 있으면서 몇 년간 추수한

것을 도둑질해 먹은 다음, 교당을 빙자하여 그 논을 억지로 산 일.

신자들이 저질렀다는 작폐 15가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관, 사대부, 민인 등 당시 향촌 사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즉, 관장을 능욕하고(1), 세거한 사대부를 축송(逐送, 13)했다는 것은 당시 향촌 사회를 지배하던 지방관과 사대부와의 관계에서 천주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천주교의 강력한 영향력을 토대로 교민들 중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2·3·4·5·6·10·11·15), 송사에 간섭하고 사형(私刑)까지 행하여 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7·8·14). 그리고 상전을 능욕하고(9), 과부를 강탈(12)하는 일도 자행되어 향촌 사회의 기존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사대부와 민인들은 이러한 청원서를 통해 교민들이 자행하는 폐단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특히 이 청원을 유학(幼學)인 박성진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양반들의 의도가 여기에 많이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도에서 향반·토호층과의 대립 사안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원서의 내용 중에 교폐의 책임을 복사 강두영과 교민들에게 국한시킨 점이 주목된다. 즉 선교사는 성당 깊은 곳에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외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교민들의 작폐를 모른다고 하면서, 작폐의 모든 죄를 강두영과 교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원서를 낸 박성진이 정말 선교사가 교민들의 행동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까? 당시 드비즈 신부는 강두영에 대해, “저의 복사와 일부 교우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놀라고 가슴 아픕니다. 시

54) 물론 이러한 내용은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플라시 공사는 유희인(儒僉人)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9가지를 외부대신에게 전하고 있다 (『법안』, 1739).

기심과 그 밖의 원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복사는 종교 일, 다시 말해 교우들 일에만 종사하고 세속 일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sup>55)</sup>라고 하였다. 이 말에 따르면 박성진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드비즈 신부의 말도 강두영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비록 양자의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선교사에 대한 박성진의 말은 교민들의 작폐는 바로잡되, 교민들의 행동과 선교사를 분리시켜, 선교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사(修辭)가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박성진의 행동은 당시 향촌 사회에서 선교사의 위세가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드비즈 신부는 재판을 받다 도망하여 성당으로 숨은 강두영 등을 군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당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요컨대 31건의 충청도 교안은, 발생 시점, 대립 구도, 발생 원인 등에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향촌의 지배 계층과 대립하는 건수가 많았다는 점, 박해 때 몰수된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관련된 교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sup>56)</sup> 사민(士民)들이 교폐의 시정을 요구하되, 교폐와 선교사를 분리하려 했다는 점 등은 충청도 교안의 특징으로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4. 교안의 처리와 선교사의 역할

〈표〉에서 제시한 31건의 교안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①번 사건은 파

55)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342쪽.

56) 박성진이 제기한 15가지의 교폐 중에도, 경작권과 관련된 것이 2건(⑤,⑥), 마름과 관련된 것이 1건(⑩),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이 1건(⑬) 있었다.

스키에 신부가 개입하여 신자를 도우면서 해결되었고, ②번에서 외국인을 침학한 두 사람은 프랑스 공사의 요청으로 처벌되었다. ③번은 병작권을 잃었지만, 군수가 지주를 벌주게 했으며, ④번은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고, ⑤번은 파스키에 신부가 군수를 찾아가 해결하였다. ⑥~⑦번은 파스키에 신부가 해를 끼친 신자들을 처벌한 경우이며, ⑧~⑩번은 동학 농민군에게 당한 피해 보상과 동학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프랑스 공사관을 통해 요구했고, 외부에서 충청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요구대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⑪번은 정산 현감이 의정부에 보고한 사안으로, 의정부에서는 선교사든 본국의 교민이든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처리하라는 지령을 현감에게 내렸다. ⑫번은 교인들이 재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며, ⑬번은 프랑스 공사가 외부에, 청양군에 훈칙(訓飭)하여 강 씨 가족을 괴롭히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⑭번과 ⑯번은 잘못된 김말봉과 체포된 신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⑮번은 기남 신부가 프랑스 공사관을 통해 최학술 등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부의 훈령에 따라 석방되었다. ⑰번은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에게 홍선명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랑스 공사는 도망한 홍성삼이 죄인이고 홍선명은 죄가 없으므로 홍선명을 잡아가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⑱번은 프랑스 공사의 개입이 있었고, 체포된 신자도 모두 풀려났지만, 석방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의 처리를 주도했고,<sup>57)</sup> ⑳번도 정부의 결정대로 처리된 듯하

57) 기남 신부는 1897년 4월 9일과 10일 자 서한을 통해 뮌헨 주교에게 도움을 청했다. 뮌헨 주교는 기남 신부와 그가 보낸 사람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2일 플랑시 공사에게 전달했고, 공사는 체포된 신자들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플랑시 공사는 기남 신부를 통해 홍주의 수비대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체포된 5명은 그대로 공주로 이송되었다가 4명은 태 20대씩을 맞고 풀려났으며, 유유복만 공주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유유복의 아들인 유계갑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고, 법부에서도 애매한 점이 있으면 석방하라는 훈령을 내리면서 유유복도 풀려날 수 있었다(『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15~416, 420~421쪽 ; 『뮌헨 주교 일기』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168·170·174쪽 ; 『司法稟報(甲)』 21책, 규장각 소장, 52a).

다. ⑱번은 기남 신부의 뜻대로 처리되었고, ㉒번은 뫼텔 주교에게 보고되었지만, 대흥 군수의 판결에 대해 주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없다. ㉑번은 주교에게 알림으로써, 외부의 훈령이 관찰사에게 전해졌고, 관찰사가 군수에게 지침을 내림으로써 교회 측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다. ㉓번은 인천덕이 덕산군에 잡혀가 자백함으로써 해결되었고, ㉔번은 프랑스 공사의 요구로 안철순 등을 체포하여 재판까지 갔으며, ㉕번은 프랑스 공사가 관여하여, 체포된 정연오는 석방하되 문제가 된 세금은 내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㉖번은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照會)하여 공베르 신부가 더 이상 교인들의 불법을 비호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프랑스 공사는 신부가 교인들을 이끌고 윤순경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윤순경을 공주 관찰부로 데려가겠다고 군수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신부가 회장을 데리고 감사에게 가서 사과했다. ㉗번은 아산 군수가 외부에 보고서를 올렸고, 박수봉도 외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박치관을 처벌할 수 있게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과는 알 수 없다. ㉘번은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프랑스 공사의 제안으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강두영을 귀가시키고, 강두영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했다. ㉙번은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에 드비즈 신부가 현영호를 풀어주고 정영원과 정이서의 체포에 협조하도록 요구했고, 프랑스 공사는 드비즈 신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㉚번은 한국동의 요구대로 외부에서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했으나, 프랑스 공사는 오히려 한국동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 측에서 작성한 ‘사건 전말서’를 외부로 보냈다. 이에 외부에서는 제천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사건 전말서’와 토지 문서를 잘 조사하고 검토하여 시비를 가리도록 지시했고, 프랑스 공사에게도 선교사가 소송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공사는 선교사가 직접 관계된 일이므로 소송에 간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㉛번은 충청남도 관찰사 심건택이 내장원에 공문을

보내 “외부에서 주교에게 조회하여 교인의 행패를 금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내장원에서는 관찰사가 선교사에게 사실을 알린 후 유명운과 김영선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뒤편 주교에게도 선교사로 하여금 종교를 빙자하여 행패하는 자들을 각별히 엄단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sup>58)</sup> 뒤편 주교는 공세리 본당의 드비즈 신부에게 상황을 문의했고, 드비즈 신부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신자들을 체포한 것에 항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교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항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sup>59)</sup> 아마 이 사건은 내장원의 결정대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안의 처리 과정은 (1) 지방관과 선교사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 (2) 지방관이 중앙에 보고하거나, 선교사가 뒤편 주교에게 알림으로써, 외부와 프랑스 공사관의 외교적 사안으로 발전하는 경우, (3)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

(1)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③, ⑤, ⑥, ⑦인데, ①과 ⑤는 교민이 지방관아에 체포되자 선교사가 지방관과 교섭하여 해결한 경우이고, ③은 선교사가 신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했고, 이를 통해 지주의 횡포를 군수가 별주도록 했다. ⑥과 ⑦은 불법을 저지른 교민을 선교사가 잡아다가 지방관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이처럼 교안이 지방관과 선교사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의 시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2)의 경우는 ②, ⑧, ⑨, ⑩, ⑪, ⑫, ⑬, ⑮, ⑯, ⑰, ⑱,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이 해당한다. 이 경우는 대체로 사건 당사자 간의 의견 상충하여 지방관과 선교사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리하여 지방관은 중앙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거나 사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할 것을 요청하고, 선교사 역시 주교에게

58) 『訓令照會存案』 55책, 규장각 소장, 106a~107a, 121a~121b.

59)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347~348쪽.

보고하여 프랑스 공사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밝게 된다. 즉 (가) '선교사 → 주교 → 프랑스 공사관'을 거쳐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과 (나) '지방관(지방민) → 외부 → 프랑스 공사관'을 거쳐 선교사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과정을 통해 교안의 해결을 모색했던 것이다.

22개의 사례 중 ②, ⑧~⑩, ⑬, ⑮, ⑰, ⑳, ㉔는 (가)의 유형이며, ⑪, ⑫, ⑮, ⑱, ㉒, ㉓,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은 (나)의 유형에 속한다. 다만 (나)-⑪의 처리 과정에서 “프랑스 공사관에 조회하겠다.”는 언급이 있지만, 『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나)-㉒, ㉓, ㉘, ㉚의 경우는 “지방민이 외부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발단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리고 외부 뿐 아니라, 소관 업무에 따라 내부(⑮, ㉔), 법부(⑫, ㉖, ㉙), 탁지부(⑱), 내장원(㉕, ㉟)도 교안에 관여했고, 프랑스 공사의 주장은 대체로 해당 선교사와 뮈텔 주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2)의 사례가 처리된 결과를 보면, 정부의 뜻대로 처리된 것(⑪1895, ⑫1895, ⑮1896, ⑰1897, ㉒1897, ㉓1900, ㉖1903, ㉟1904), 프랑스 공사(교회)의 요구대로 해결된 것(②1891, ⑧~⑩1894, ⑱1897, ㉑1900, ㉔1900), 양자의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㉕1902, ㉘1903), 의견이 대립된 경우(⑮1897, ㉙1903, ㉚1903),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⑬1895, ㉗1903)가 있다.

그런데 양자의 타협이 이루어진 두 경우는 교인이 풀려난 사안이므로 교회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의견이 대립된 경우는 지방관과 지방민이 교회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공사의 반대에 막혀 뜻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안들이다. 물론 이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협을 이룬 두 사례도 지방관과 지방민이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대립한 사안 역시 교회 측에 유리하게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④(1892), ⑭(1896), ⑰(1897), ㉒(1900)은 「뮈텔 문서」를 통해 사건의 개요만 알려져 있고, 처리 결과는 알 수 없다. 이 중 ⑭번은 교인이 가해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인이 피해를 본 사례이다. 아마 이 사

례들도 외교적인 교섭 단계를 거쳤다면, 교회 측에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1904년 9월에 있었던 ㉓번 박평식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 관찰사가 내장원에 보고한 사안인데, 보고서 중에 “교인의 행패는 관력(官力)으로도 금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하여금 서울의 주교에게 조회하여 금지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 교안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결과를 알 수 없는 교안이 교회에 유리하게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31건의 교안 중 ‘자세’의 비중이 컸듯이, 지금까지 천주교 측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교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즉 프랑스 선교사들이 영사 재판권을 신자들에게까지 최대한 적용하려는 부작용으로 교안이 발생했고, 한국의 정치·사회·문화·관습, 그리고 주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때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에서 대부분의 교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1896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교회의 힘과 선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신자 보호가 교안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신자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사회 세력으로 응집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하였다.<sup>60)</sup>

이에 반해 1899년 당시 동래 교회의 신부가 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 회장에게 지시한 조목은 근거로, 성직자들이 교인의 비행을 방치하고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두둔하여 조장하기를 일삼지 않고, 단속하기에 노력한 측면도 있음을 밝힌 견해도 있다.<sup>61)</sup>

60) 장동하, 앞의 논문, 390~391쪽.

61) 이원순, 앞의 논문, 202~203쪽. 이때 신부가 지시한 조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당은 거룩한 집이니, 그 안에 사람을 가두거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요, ② 교우들이 모여 패지(牌旨)나 사통(私通)을 못 할 것이요, ③ 교당 안에서 수작을 부려 사실을 조사하거나 번다히 논의를 못 할 것이요, ④ 신부 분부 없는 일을 비교인들 앞에서 있는 체를 못 할 것이요, ⑤ 관청 송사에 관하여 정당한 까닭 없이 성교인과 성교에 상관되는 일이라고 못 할 것이요, ⑥ 이상의 규칙을 회장이 살펴 범하지 못하게 하되, 범한 자가 있으면 신부에게 알릴 것이

동래 신부와 같은 모습은 충청도에서 사목하던 신부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동래처럼 구체적인 조목까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교폐에 대해 일방적으로 신자를 옹호하는 입장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예산 간양골의 파스키에 신부는 지주가 교민에게 병작권을 주지 않자, 아산 군수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했다. 그 결과 군수가 지주를 때로 다스렸으나 지주의 병작 거부는 계속되었다. 이에 회장은 신부에게 서울의 중재를 부탁했지만, 파스키에 신부는 관장이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공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며, 지방 관청과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지시했다(③).

그뿐만 아니라 파스키에 신부는 프랑스 공사와 뫼텔 주교가 보낸 사람이라고 사칭한 박 마지아 등을 잡아다가 매를 친 후 군수에게 넘겨 법대로 처리하도록 했고, 교회와 신부를 내세워 외교인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⑥, ⑦).

덕산 양촌의 퀴를리에 신부는 1897년 해미에 사는 옹기점의 모녀가 서산 현감을 지낸 양반에게 구타를 당해 임신한 딸이 사망했을 때, 아들이 복수를 위해 서울 주교에게 가겠다고 하자, “이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다.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조선 법에 따라 재판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뫼텔 주교에게 전하기도 했다.<sup>62)</sup>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사들은 신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대체로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개입하여 도와주려고 했지만, 교우라도 공사나 주교를 사칭한 경우(⑥, ⑦)는 엄벌로 다스렸고, 옹기점 모녀 사건처럼 그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면, 조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관

요, ⑦ 범한 자를 회장이 알고 신부에게 알리지 않으면 회장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62)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127~129쪽.

리가 공정하게 처리했으면(③)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장이나 복사가 관련된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회장 윤순경 사건에서 보여준 공베르 신부의 태도(②⑥)와 복사 강두영 사건에서 보여준 드비즈 신부의 태도(②⑧)는 신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 충청도에서 발생한 31건의 교안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교안의 발생 시기, 대립 구도, 원인, 성격 등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다만 타지역에 비해 향촌의 지배 계층과 대립하는 건수가 많았고, 토지(박해 때 몰수된 토지 포함)와 관련된 교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그리고 사민(士民)들이 교폐(敎弊)의 시정을 요구하되, 교폐와 선교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 등은 충청도 교안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교안은 ‘지방관과 선교사’ 단계에서 해결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으로 보고되어 ‘정부 대 프랑스 공사관’의 외교 사안이 되기도 했는데, 대체로 교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교안에 대한 선교사들의 입장은 교세의 증가와 교회의 위신을 위한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교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방관의 판결을 따르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교안 사건에 임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31건의 분석 결과가 충청도 교안만의 특징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모든 지역의 교안 사건이 새롭게 정리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비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이러한 한계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하나의 지역 사례 연구라고 하겠다.

투고일 : 2023. 11. 9. 심사 시작일 : 2023. 11. 27. 심사 완료일 : 2023. 12. 18.

참고문헌

1. 자료

『京畿道來去案』, 규장각 소장.

『관보』 제776호.

『구한국외교문서』 19~20권(「법안」 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영인본), 1969.

『내부내문』, 규장각 소장.

『內府來去文』, 규장각 소장.

『뫼텔 주교 일기』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사법품보』 (갑)·(을), 규장각 소장.

『서울교구연보』 (I), 명동천주교회, 1984.

『외부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영인본), 2000.

『照覆起案』, 규장각 소장.

『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1883~1989 교세통계표』, 천주교 대전교구, 1990.

『忠淸道關草』, 규장각 소장.

『忠淸南北道來去文』, 규장각 소장.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천주교 대전교구, 1994.

『平理院來去文』, 규장각 소장.

『황성신문』.

『訓令存案』, 규장각 소장.

『訓令照會存案』, 규장각 소장.

『訓指起案』, 규장각 소장.

## 2. 논저

- 喬飛, 「清代教案研究的回顧與反思」, 『중국사연구』 67, 중국사학회, 2010.
- 김수태, 「구합덕 성당 성직자의 서한 분석」, 『교회사연구』 2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김수태, 「한말 일제강점기 내포지역의 천주교」,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II, 경인문화사, 2006.
- 김정환, 「조선 후기의 천주교 수용」,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당진시·내포교회사연구소, 2012.
- 김정환,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명단」, 내포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
- 박찬식, 「근대 천주교회의 성격과 교안의 발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방상근, 「개화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착과 한국 인식」, 『東洋學』 6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 서종태, 「한말 전라북도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전북 지역 교안을 중심으로」,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사상·종교1), 흐름, 2016.
- 이영호,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동학여당(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담론』 88, 호서사학회, 2018.
- 이원순, 「조선 말기 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 이원희, 「강원지역과 교안」, 『강원지역 천주교사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장동하, 「한말 교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차기진, 「충청도 교회와 본당 廢置에 대한 연구—내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문화 활동과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ABSTRACT

**Kyo-an(教案) and French missionar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Bang, Sang-Keun  
Historian

Kyo-an(教案) refers to all disputes(conflicts)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or missionaries and officials caused by Christianity, as well as diplomatic negotiations cases resulting from it. This article analyzes 31 Kyo-an in Chungcheong-do from the time missionaries re-entered Korea to 1905.

The characteristics of the 31 cas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anti-Catholicism’ and ‘Tendency to rely on the influence of the church’. Among them, 12 cases were of the ‘antipathy’ character and 19 cases of the ‘relying’ character. In the case of ‘antipathy’, the number of cases before 1895 was higher than after, and the number of Kyo-an related to ‘relying’ after 1896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As of 1895, there were many cases of ‘antipathy’ before and a large number of ‘relying’ after that, and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tatus of the Catholic Church has risen since 1895.

These content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but The following contents can be pointed out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ngcheong-do Gyoan.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re were more cas-

es of confrontation with the ruling class in the villages,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land-related Kyo-an, and the movement to separate the believer's fault from the missionaries.

The Kyo-an was either resolved at the 'local officials and missionaries' stage, or if not, it was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vened by the Foreign Office and the French legation. Of the 31 cases, 22 cases developed into diplomatic matters. An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treatment, 8 cases wer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overnment, and for the rest, solutions were sought in a direction favorable to the church.

The attitude of the missionaries toward the Kyo-an was not one-sided. Although they actively responded to cases related to the increase in church membership and the prestige of the church, they followed the judgment of the local official in cases where the members were clearly wrong. However, cases involving the catechist or server generally showed a protective attitude towards their actions.

**Keywords** : Chungcheong-do, Kyo-an(教案), missionaries, anti-Catholicism, Tendency to rely on the influence of the church